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짜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# 보도참고자료

보도

배포시부터 보도 가능

배포

2018.11.28.(수)

담당부서

특별조사국

윤동인 국장(3145-5100), 최동헌 팀장(3145-5105)

## 제목 : 단주매매 시세조종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

- “소량(1~10주)의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박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을 의심하세요!”

I

### 배경

- 최근 금융감독원은 약 1년에 걸친 기획조사를 통해 ‘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’ 세력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,
- 이후 금감원과 검찰(의정부지검)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세조종행위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\*한 바 있음
  - \* 금일 검찰은 동 사건에 관해 수사결과(구속기소 4명, 불구속기소 7명)를 발표
- ※ 사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「초단기 단주거래 이용한 조직적 시세조종사건 수사결과(의정부지검, '18.11.28.)」 보도자료(별첨) 참조

### ‘초단기 단주매매 시세조종 사건’ 진행 경과

- 2017. 10. : 금감원(특별조사국) 기획조사 착수
  - 2018. 9. : 금감원 조사 완료, 증선위 의결 및 검찰 고발
  - 2018. 11. : 검찰(의정부지검) 수사결과 발표
- 아울러, 주식카페 등에서 단주매매 시세조종을 투자기법으로 소개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반복적인 단주매매가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

II

**단주매매 시세조종 현황 및 특징**

- **(현황)** 금감원은 2012년 이후 256개 종목에 대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46명을 조치하였고, 부당이득금액은 77.1억원 수준
  - 특히, 금년의 경우 87개 종목에 대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8명을 조치하였으며, 부당이득금액은 39.8억원에 달함

**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 관련 조치내역('12년~'18.10월)**

(단위 : 개, 명, 억원)

| 기간 <sup>1)</sup> | 종목수 | 조치대상자 수 |    |    |                   | 부당이득 |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| 고발      | 통보 | 경고 | 과징금 <sup>2)</sup> |      |      |
| '12년 ~ '18.10월   | 256 | 46      | 5  | 29 | 10                | 2    | 77.1 |
| '18.1 ~ 10월      | 87  | 8       | 2  | 6  | -                 | -    | 39.8 |

주 : 1) 조치시점 기준, 2) 2015.7.1.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(시세조종형)에 따른 조치

- **(특징)** IP 및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회피수단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는 경향
  - 주협약자가 매매차익용 계좌를 이용하여 선매수하고, 조력자가 시세조종용 계좌를 이용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시세조종주문 제출
    - 시세조종용 계좌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동원하여 자동주문 프로그램(매크로)을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적발
  - 매매자금은 증권계좌간 연계성 차단을 위해 대부분 현금거래

**< 참고 > 단주매매 시세조종 개요**

- ◆ 정 의 : 소량(통상 1~10주) 주식의 매수·매도주문을 시장가 등으로 반복 제출하여 즉시 체결시켜 **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함**으로써 **매수세를 유인**하는 행위
- ◆ 방 식 : **【① 先매수】** 테마주 등 시장의 관심종목을 선정하여 일정 물량을 매집  
**【② 시세조종】**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**매수세 유인**을 통한 **시세 견인**  
**【③ 차익실현】** 목표수익률(1~2%) 도달시 매집한 주식을 **전량 매도**하여 **차익실현**

① 주식 선매수



② 시세조종주문 반복을 통한 주가 견인



③ 차익 실현



### Ⅲ

### 투자자 유의사항

- 투자자들은 주식매매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
  - ① 소량(1~10주)의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박\*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것
    - \* 반복적 단주매매로 인해 체결내역이 빠르게 갱신되면서 나타나는 현상
  - ②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주문을 번갈아가며 반복 제출\*할 경우 시세조종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
    - \* (예) 즉시 체결가능한 시장가 등의 가격으로 1~10주씩 사고 파는 주문을 반복 제출
  - ③ 타인의 시세조종행위를 돕기 위하여 매매주문을 대신 제출하거나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세조종혐의로 함께 처벌될 수 있음

### Ⅳ

###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금감원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,
  - 단주매매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,
  -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, 검찰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하여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

- 한편,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**<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**

☞ 인터넷 :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(<http://www.cybercop.or.kr>) 접속

☞ 전 화 : 콜센터 1332(4→3) 또는 02-3145-5556, 5573, 5582

팩 스 : 02-3145-5544

☞ 우 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조사기획국 시장정보분석팀  
(우편번호 : 07321)

※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